

「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근한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 따라 구미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며,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 간에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,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구미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(제22조)
(당초) 보조할 수 있다 → (변경) 보조하여야 한다
- 인사교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(제2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
 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12조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30조의4
 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6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의무화와 체육회 직원 인사교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현행	개정안
제22조(운영비 보조)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 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<u>보조할 수 있다.</u>	제22조(운영비 보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조하여야 한다.</u>

- 개정안 제22조는 운영비 보조에 대한 필수조례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, 상위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(2022. 8. 11.시행)이 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”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당연한 조치임.

그러나, 집행기관에서 필수조례 마련기한(2023. 12. 31.)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시정해야할 부분이며, 집행기관은 추후 업무 추진 시 법집행의 공백과 위법한 행정 초래 방지를 위해 필수조례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9조(인사교류) ①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을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파견 또는 상호파견 근무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,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과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하거나 겸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, 파견된 직원에게는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개정안 제29조는 인사교류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,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인사교류 추진에 관한 권고와 그에 따른 파견직원 수당지급 근거마련을 위한 것임.

현재 경상북도와 구미시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의 인사규정에 파견규정이 있으나 2019년 이후 가맹 종목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 인사교류 시행 사례가 없음.

이에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 직원의 파견근무를 적극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.

소관부서 및 체육회에서는 인사교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함께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